

# 2024학년도 학생 출결 관리 규정

배곧초등학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규칙,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93호, 2022.1.17. 일부 개정)에 근거하여 배곧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출석, 결석 등과 개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 출결사항 점검 및 기록)** 학생 출결사항은 수업 직전에 점검하고, 출결사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한다.

**제3조(출석 처리)** 출석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봄방학 및 가을방학, 개교기념일, 임시 휴업일을 제외한 등교일에 학교에 나와 해당 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뜻하며, 수업일수(출석할 일수와 수업일수는 동일)로 계산한다.

**제4조(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에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①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⑤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 다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⑧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월 1회 결석)

### 제5조(질병 결석)

-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④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⑥ 환경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④~⑥의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제6조(미인정 결석)

- 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⑤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⑥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⑦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제7조(기타 결석)

-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중지 처리)

- ① 법정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처리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 제9조(체험학습 처리: 출석 인정)

- ① 체험학습(개인 및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출결처리는 별도의 계획(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다.
- ②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한다.
- ③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제10조(지각, 결과, 조퇴의 처리)

- ①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②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③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④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인 경우 1회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는 지각, 결과, 조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⑥ 개근(하루도 결석 없음):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 ⑦ 연속된 7일 이상의 결석은 그 사유를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⑧ 지각, 조퇴, 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는다.